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호

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

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①도 로 의 종 류	고속국도	②노 선 명	제1호 경부선
③통행료수납자	한국도로공사 사장	④통 행 료	확장구간 통행료 할증 수납 (6차로 이상 20%) ※ 주요구간 통행료 : 따로붙임
⑤시설물의명칭	종전과 같음		
⑥통행료수납구간	○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~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(5.91km, 4→6차로 확장 구간)		
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	○납부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○감면대상 :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		
⑧통행료수납방법	요금소 통과 시 현금(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,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), 선불·후불 하이패스카드, 전국호환 교통카드,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		
⑨통행료수납기간	2022년 12월 23일(14:00)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※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		

(붙임) 주요구간 통행료

(단위 : 원)

구 간(나들목)		통 행 료					
		구 분	1종	2종	3종	4종	5종
금강	옥천	현 행	1,400	1,400	1,400	1,600	1,700
		변 경	1,500	1,500	1,500	1,700	1,800

※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(hipass.co.kr)에서 확인 가능함